

서울고등법원 2016. 1. 15 선고 2015나2012206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항소인 신용보증기금

피고, 피항소인 D

변론 종결 2015. 10. 30.

판결 선고 2016. 1.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제1심 공동피고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0. 31.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 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 1)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에 2010. 5. 27. 보증금액 722,500,000원, 보증기한 2011. 5. 26., 대출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으로 된 신용보증서를, 2013. 5. 23. 보증금액 144,400,000원, 보증기한 2014. 5.22. 대출은행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 된 신용보증서를 각 발급하였다.
- 2) 원고와 A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A의 위 각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대신 변제할 경우 A은 원고에게 그 변제액 및 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 주식회사 C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3) A는 위 각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하나은행으로부터 850,000,000원을, 국민은행으로부터 180,000,000원을 각각 대출받았는데, 2014. 3. 10.경 원금 연체 등으로 위 각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4.5. 30. 국민은행에 A의 대출금 채무 145,931,256원을, 2014. 6. 23. 하나은행에 A 대출금채무 657,048,919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나. B과 피고 간의 매매계약

- 1) B은 A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의 부(父)인 E은 A에 근무하는 직원이다.
- 2)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래 B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2013. 5. 21. 채권최고액 288,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 채무자 B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마쳐졌다.
- 3)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6. 같은 해 10. 3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4. 1. 6.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4) 또한 B과 피고 간에 2013. 10. 31.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33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융자금 160,000,000원은 피고가 인수하고 나머지 잔금 140,000,000원은 2013. 11. 6.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있다(이하 B과 피고 간의 2013. 10. 31.자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갑 제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B이 무자력인 상태에서 2013. 10. 3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한편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위 매매계약일 이후에 발생하였지만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되었다.

다. 따라서 원고는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한편 사해행위 이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원고는 원상회복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170,000,000원을 구한다.

3.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다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만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있다. 그러나 사해행위 여부가 문제되는 재산처분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다라도 단순히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었다거나 별건의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다828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3. 10. 31. 체결되었는데 B은 위매매계약일 이전에 A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권의 행사로 보전하려고 하는 피보전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었다고 할 것이나,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실제로 성립한 것은 위 매매계약일 이후이므로 결국 매매계약 당시 각 연대보증약정에 터잡아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실제로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다. 그런데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당심에서의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채무자인 A은 2013년도에 전년도 대비 자본금이 7억 원 감소하고 부채는 6억 원 가량 증가하며 당기순이익은 -671,443,448원의 적자를 보였고, 급기야 2014. 3.10. 무렵부터 이 사건 신용보증에 따른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A이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체한 것은 이 사건 매매계약일로부터 약 4개월이 경과한 이후인바, 을라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의 2013년 4분기 매출액이 2,291,116,064원에 달하는 등 A은 2012년 1분기부터 2013년 4분기까지 분기별로 평균 약 1,900,000,000원에 이르는 매출을 올리다가 2014년 1분기부터 매출이 급격히감소하기 시작한 사실도 인정되고, 여기에 원고 역시 2013. 5. 23. 추가로 A에 대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기도 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당시에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단정하기 어렵고, 그 외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결국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시에는 아직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사해행위의 성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보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노태악, 판사 구자현, 판사 홍승구

별지 부동산목록

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 59.5㎡

나.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 지상

목조와즙평가건본가1동

건평7평9홉4작5재

끝.

